

영국 · 캐나다 ·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김규수*·김용혁**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결제연구팀 차장(Tel : 02-750-6597, E-mail : kkyusoo@bok.or.kr)

** 결제연구팀 조사역(Tel : 02-750-6636, E-mail : kyh@bok.or.kr)

- ◆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관철 결제연구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차 례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의 특징	2
1. 추진 개요	2
2. 주요 특징	3
III. 주요국별 추진현황	7
1. 영국	7
2. 캐나다	27
3. 호주	36
IV. 시사점	47
<참고 1>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경과	50
<참고 2>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 개요	52
<참고 3>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리뷰 T/F 개요	54
<참고 4> 호주의 지급결제포럼 개요	55
<참고 5>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현황	56
<참고자료>	57

< 요약 >

I. 검토 배경

- 1990년대 이후 IT 기술혁신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2008년부터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수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 신규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의 도입, 사기 방지 및 보안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음·수표 이용의 감소 및 전자 지급수단 이용의 확산 등과 같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데다 인터넷뱅킹 등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점을 고려,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지급결제시장의 발전전망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큼
- ⇒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및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II.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의 특징

1. 추진 개요

□ 영국·캐나다·호주에서는 2008년부터 자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현황 분석 및 장기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지급결제 발전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를 중심으로 2008.5월 “국가지급결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을 목표로 추진중

* <참고 2>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 개요” 참조

— 캐나다는 지급결제협회(CPA)를 중심으로 2010.2월 소액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 2020(Vision 2020)”을 수립하여 2020년을 완료목표로 추진

— 호주도 지급결제협회(APCA)를 중심으로 2008.12월 “소액결제 발전전략(roadmap)”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국의 소액결제 발전전략 개요

	영국	캐나다	호주
발전전략	National Payments Plan(NPP)	Vision 2020	Low Value Payments Roadmap
추진주체	지급결제위원회 (Payments Council)	캐나다지급결제협회 (CPA)	호주지급결제협회 (APCA)
수립시기	2008.5월	2010.2월	2008.12월
목표시점	2018년	2020년	2018년
추진대상	소액 및 거액 결제시스템 모두 포괄 · 수표, 대량이체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 · 카드, ATM · CHAPS 등 거액결제 시스템	수표, 카드, 대량이체시스템 등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시스템 전반	수표, 대량이체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 중심 (현금, 거액결제시스템은 제외)

2. 주요 특징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 주요국은 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이용자 등 지급결제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장기발전전략을 마련
 - 영국의 경우 지급결제위원회에 운영기관과 금융기관 외에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참가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비자 등 이용자포럼을 구성하여 발전전략을 협의
 - 호주의 경우에도 지급결제포럼 등을 구성하여 기업 및 소비자 단체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
- 또한 각국에서는 해외 중앙은행 및 지급결제협회 등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서베이 및 중앙은행간 공동연구 등을 적극 활용
 - 캐나다는 2009.2월 8개국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현황, 지급결제협회 조직·운영구조 등에 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
 - 호주도 2009.3월 지급결제포럼 개최시 영국 지급결제위원회와 협력

(수표 이용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수표의 장기적인 이용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수표 청산시스템을 폐지하거나 대체지급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수표 이용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유도

- 영국의 경우 2018년까지 수표 청산시스템을 폐지할 계획을 추진
-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는 수표의 전자정보화를 추진하고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표 이용의 축소를 유도

주요국의 수표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영국	캐나다	호주
대응전략	- 2018년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 계획 - 대체지급수단 개발	- 자동이체 등 대체지급수단 개발 - 수표의 전자정보화 추진	- 자동이체 대체지급수단 개발 - 수표 처리비용 절감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 촉진)

- 휴대폰 보급 확대 및 기술혁신 등을 반영하여 모바일 결제, 비접촉 선불카드 등 신규 지급수단의 개발을 촉진
- 영국과 캐나다는 모바일결제 등 신규 지급수단의 표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을 유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이용자와 금융기관간 지급거래·청산·결제 절차의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확대, E-invoicing* 도입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리비용을 절감

* 기업간 거래대금 청구와 대금결제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자동화하는 것으로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일부로 볼 수 있음. 금융EDI의 정의 및 현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9, 2008.12 참조

- 캐나다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결제 처리절차의 STP 확대를 추진

- 영국은 E-invoicing 표준화 도입 등을 통해 기업부문 지급결제 서비스의 자동화·표준화 추진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 제고 및 국제표준 도입)

- 지급결제 메시지의 국제표준인 ISO 20022* 도입 등을 통해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를 적극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2004년 제정한 금융서비스 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0.4, p.76 참조

- 영국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유럽 및 ISO에서 제정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화 이행계획을 추진
- 캐나다도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해 국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을 수용할 계획
- 호주는 국내 지급결제 메시지의 ISO 20022와의 호환성 가능성을 점검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당일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 영국의 경우 이미 2008.5월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중심으로 당일 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s*를 도입

*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을 통한 개인간 소액거래의 청산 및 결제가 당일중 이루어져 익일 차액결제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해결한 시스템

- 캐나다의 경우 익일 차액결제방식인 일부 소액결제를 대상으로 당일중 결제 또는 실시간 결제 방식의 도입을 추진
- 호주의 경우에도 대량이체시스템(BECS)을 중심으로 청산·결제 시점의 조기화 및 고객의 자금이용시점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

(지급수단의 사기방지 및 보안강화)

- 카드, 자금이체 등 전자 지급수단의 이용확대로 사기 및 위변조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사기방지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
 -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 도입시 보안성 요건을 강화하고 IC카드, 생체인식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
 - 이와 함께 지급수단 사기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과 정책당국간 정보공유 및 협력 체제를 강화
 - 영국의 경우 2009.6월 공공 및 민간기관간 지급수단 사기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그룹을 설립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교육·홍보 강화)

-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지급수단의 현명한 선택 및 이용을 지원하고 ID 또는 개인정보 도난 등에 따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는 정책당국, 은행협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협력하에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추진
 - 한편 저소득층, 노년층, IT 미숙련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금융기관 서비스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소액결제시스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대 초반에 구축이 완료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체계의 평가 및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필요성이 증대
 - 주요국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사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도입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
 -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수립시 운영기관과 금융기관 뿐 아니라 주이용자인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우선 이용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어음·수표 등 장표지급수단의 감소추세를 점검하고 수표 처리비용의 절감 및 대체지급수단의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유도할 필요
 - 특히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및 새로운 지급수단의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다음으로 국가간 거래 및 결제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 제고 방안을 모색
 - ISO 20022 등 지급결제 메시지 국제표준 등의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 또는 호환 가능성을 점검하여 추진
- 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위변조 및 사기 방지를 위한 보안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와 함께 각종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서비스 이용방법 및 사기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
 -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 손실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공표할 필요
-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시점 조기화 또는 당일중 차액결제방식 도입 등을 통해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

I. 검토 배경

- 1990년대 이후 IT 기술혁신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2008년부터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수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 신규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의 도입, 사기 방지 및 보안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음·수표 이용의 감소 및 전자 지급수단 이용의 확산 등과 같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데다 인터넷뱅킹 등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점을 고려,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지급결제시장의 발전전망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큼
 - 비현금 지급수단중 어음·수표 이용비중(건수 기준)이 1995년 67.1%에서 2009년 10.2%로 감소한 반면 전자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같은 기간중 32.9%에서 89.8%로 급증
- ⇒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및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II.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의 특징

1. 추진 개요

□ 영국·캐나다·호주에서는 2008년부터 자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현황 분석 및 장기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지급결제 발전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를 중심으로 2008.5월 “국가지급결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을 목표로 추진중

* <참고 2>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 개요” 참조

— 캐나다는 지급결제협회(CPA)를 중심으로 2010.2월 소액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 2020(Vision 2020)”을 수립하여 2020년을 완료목표로 추진

— 호주도 지급결제협회(APCA)를 중심으로 2008.12월 “소액결제 발전전략(roadmap)”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국의 소액결제 발전전략 개요

	영국	캐나다	호주
발전전략	National Payments Plan(NPP)	Vision 2020	Low Value Payments Roadmap
추진주체	지급결제위원회 (Payments Council)	캐나다지급결제협회 (CPA)	호주지급결제협회 (APCA)
수립시기	2008.5월	2010.2월	2008.12월
목표시점	2018년	2020년	2018년
추진대상	소액 및 거액 결제시스템 모두 포괄 · 수표, 대량이체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 · 카드, ATM · CHAPS 등 거액결제 시스템	수표, 카드, 자동이체시스템 등 소액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시스템 전반	수표, 대량이체시스템, 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 중심

2. 주요 특징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가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 주요국은 지급결제협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이용자 등 지급결제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장기발전전략을 마련
 - 영국의 경우 지급결제위원회에 운영기관과 금융기관 외에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참가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비자 등 이용자포럼을 구성하여 발전전략을 협의
 - 호주의 경우에도 지급결제포럼 등을 구성하여 기업 및 소비자 단체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
- 또한 각국에서는 해외 중앙은행 및 지급결제협회 등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서베이 및 중앙은행간 공동연구 등을 적극 활용
 - 캐나다는 2009.2월 8개국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현황, 지급결제협회 조직·운영구조 등에 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
 - 호주도 2009.3월 지급결제포럼 개최시 영국 지급결제위원회와 협력

(수표 이용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수표의 장기적인 이용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수표 청산시스템을 폐지하거나 대체지급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수표 이용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유도

- 영국의 경우 2018년까지 수표 청산시스템을 폐지할 계획을 추진
-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는 수표의 전자정보화를 추진하고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표 이용의 축소를 유도

주요국의 수표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영국	캐나다	호주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 계획 - 대체지급수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이체 등 대체지급수단 개발 - 수표의 전자정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이체 대체지급수단 개발 - 수표 처리비용 절감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 촉진)

- 휴대폰 보급 확대 및 기술혁신 등을 반영하여 모바일 결제, 비접촉 선불카드 등 신규 지급수단의 개발을 촉진
 - 영국과 캐나다는 모바일결제 등 신규 지급수단의 표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을 유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이용자와 금융기관간 지급거래·청산·결제 절차의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확대, E-invoicing* 도입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리비용을 절감

* 기업간 거래대금 청구와 대금결제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자동화하는 것으로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일부로 볼 수 있음. 금융EDI의 정의 및 현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9, 2008.12 참조

- 캐나다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결제 처리절차의 STP 확대를 추진

- 영국은 E-invoicing 표준화 도입 등을 통해 기업부문 지급결제 서비스의 자동화·표준화 추진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 제고 및 국제표준 도입)

- 지급결제 메시지의 국제표준인 ISO 20022* 도입 등을 통해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를 적극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2004년 제정한 금융서비스 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0.4, p.76 참조

- 영국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유럽 및 ISO에서 제정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화 이행계획을 추진
- 캐나다도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해 국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을 수용할 계획
- 호주는 국내 지급결제 메시지의 ISO 20022와의 호환성 가능성을 점검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당일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 영국의 경우 이미 2008.5월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중심으로 당일 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s*를 도입

*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을 통한 개인간 소액거래의 청산 및 결제가 당일중 이루어져 익일 차액결제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해결한 시스템

- 캐나다의 경우 익일 차액결제방식인 일부 소액결제를 대상으로 당일중 결제 또는 실시간 결제 방식의 도입을 추진
- 호주의 경우에도 대량이체시스템(BECS)을 중심으로 청산·결제 시점의 조기화 및 고객의 자금이용시점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

(지급수단의 사기방지 및 보안강화)

- 카드, 자금이체 등 전자 지급수단의 이용확대로 사기 및 위변조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사기방지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
 -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 도입시 보안성 요건을 강화하고 IC카드, 생체인식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
 - 이와 함께 지급수단 사기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과 정책당국간 정보공유 및 협력 체제를 강화
 - 영국의 경우 2009.6월 공공 및 민간기관간 지급수단 사기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그룹을 설립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교육·홍보 강화)

-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지급수단의 현명한 선택 및 이용을 지원하고 ID 또는 개인정보 도난 등에 따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는 정책당국, 은행협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협력하에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추진
 - 한편 저소득층, 노년층, IT 미숙련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금융기관 서비스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주요국별 추진현황

1. 영국

가. 개요

- 2008.5월 영국의 민간 자율기구인 지급결제위원회*는 2018년까지 국내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발전전략을 담은 “국가지급결제 발전 계획”**을 마련

*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가하는 민간 회원제 조직으로 2007.3월 설립(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경과, <참고 2>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 개요 참조)

**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Setting the strategic vision for UK payments”, 2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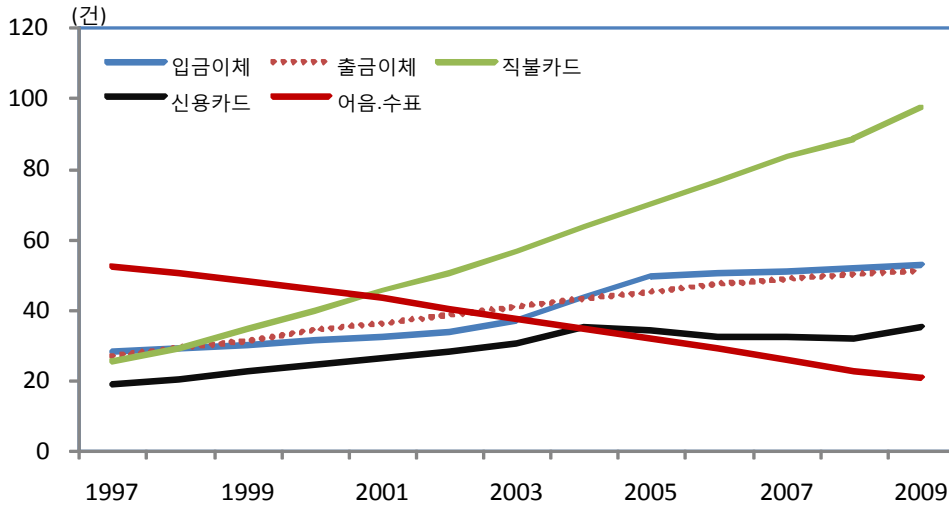
- 2007.11월 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5월 최종안 확정

- 동 발전계획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장기 발전계획은 수표이용의 지속적인 감소,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빠른 증가세 등 국내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유럽 단일 지급결제권역(SEPA) 추진, 지급결제관련 국제표준의 개발 등의 대외 여건도 반영

- 최근 20년간 수표 이용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카드, 계좌이체 등의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꾸준히 증가

영국의 지급수단별 이용규모¹⁾ 추이



주: 1) 1인당 이용건수 기준
 자료: ECB, Payment Statistics, 각호

- 또한 2018년까지 현금 및 수표 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직불카드 및 Faster Payments 시스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영국의 지급수단 이용 전망

	1999	2009	2018
급여중 현금지급비중	1/8	1/20	1/50
현금거래 비중	73%	59%	45%
pub내 현금이용비중	90%	40%	25%
직불카드 이용규모	650억 파운드	2,640억 파운드	4,900억 파운드
개인수표 이용비중	6%	2%	0.8% ¹⁾
Faster Payments	N/A	2.94억 파운드	8.36억 파운드 ²⁾

주: 1) 2009.12월 수표폐지 결정 이전에 추정된 수치

2) 2008.5월 도입

자료: Payments Council, "Communique News Letter, Issue 1, 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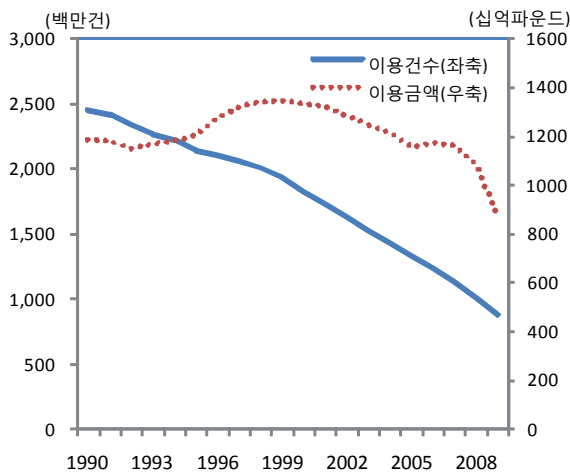
나. 부문별 추진계획

(1) 효율성 측면

(수표청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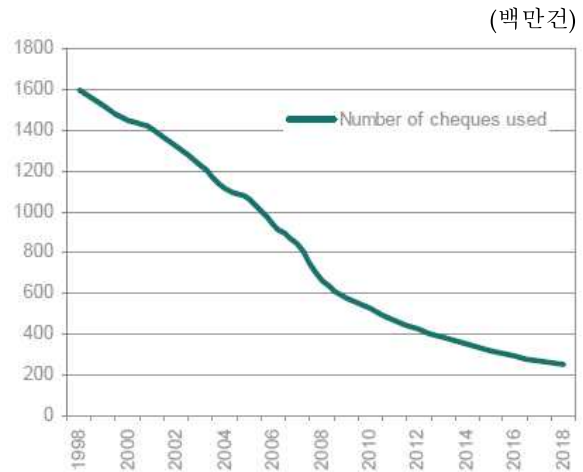
- 영국에서는 1990년 이후 수표 이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수표는 직불카드 이용 확대 등으로 급격히 감소

영국의 수표 이용현황



자료: Payments Council 홈페이지

영국의 개인수표 이용전망



자료: Payments Council(2010.4)

- 대체지급수단 등장에 따른 수표 이용감소 경향으로 장기적으로 수표 청산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예: 네덜란드, 스웨덴)
- 지급결제위원회는 2007년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안)”에서 2018년말까지 수표청산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
- 2009.12.16일 지급결제위원회는 이사회(Board Meeting)를 개최, 현행 수표청산제도를 2018.10.31일까지 폐지하기로 의결*

* Payments Council, “The Future of Cheques in the UK”, 2009.12

- 다만 동 제도 폐지의 시한내 실행은 그 이전에 수표청산제도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대체지급수단(adequate alternative)이 개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발표
- 대체 지급수단의 개발·보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2016년에 수표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final review)하여 결정할 계획
- 아울러 고령자, 영세상인 등 수표거래에 익숙한 계층의 지급수단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

영국 지급결제위원회의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 추진계획

시기	추진계획
2009.12	2018년말까지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계획 발표
2010.12	2016년 수표 청산시스템 최종 폐지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대체지급수단의 존재, 수표이용자의 수표 폐지계획 인지, 이용자의 대체지급수단 이용 가능
2011~2014	수표 대체지급수단 개발
2014	수표 폐지정책 및 평가기준에 대한 중간점검
2016	추진상황 점검 및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여부 최종 결정
2018.10월말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 목표시점

자료: Payments Council(2010.12)

- 이같은 수표폐지 결정은 1990년대 이후 수표거래 규모의 급격한 축소, 수표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의 과다, 다양한 대체 지급수단의 등장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개인수표 이용규모가 1990년중 24억파운드에서 2008년중 6.6억 파운드로 현저히 감소
- 수표의 지급시점부터 청산까지의 결제주기는 2~4일로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매우 늦음

— 수표를 대신하는 자동이체, 대량입출금 등 다양한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동 결정에 따라 지급결제위원회는 향후 모바일 지급수단*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결제수단 등 다양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

* 모바일폰이나 시계 등에 지급정보가 입력된 칩(chip)을 부착하여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영국의 부문별 수표 이용규모(2008년 기준) 및 대체 지급수단

구분	이용건수 (백만건)	대체 지급수단
P2P	99	· Faster Payments, 선불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P2B	136	· 직불·신용카드, 자동이체, (on-line) Faster Payments, 전자금융 서비스 확대 등
소매점, 여행, 여가분야 소비자 지급	175	· 직불·신용카드, Faster Payments, 모바일 계좌이체, 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대금납부	81	· Faster Payments, 직불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기타 소비자 금융거래	74	· Faster Payments, 직불·신용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등
정기 요금납부(공과금, 지방세 등)	96	· Faster Payments, 직불·신용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등
수표이용 현금인출	60	· 카드 이용 ATM 또는 창구 출금
급여 및 개인연금	32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배당금	22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전자상품권(virtual voucher)
기타 기업-개인간 거래 (환불, 보험계약, 상금 등)	74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전자상품권
기업-개인간 정기거래, 정부기관 지급거래	534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전자상품권

자료: Payments Council(2009.12)

(수표보증카드제도)

- 2009.6월 지급결제위원회는 2011.6.30일 수표보증카드제도(Cheque Guarantee Card Scheme)를 폐지하기로 결정*

* 2009.6월 “수표보증카드제도 검토보고서(Review of the UK Domestic Cheque Guarantee Card Scheme)” 발간

- 1969년에 도입된 수표보증카드제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수표발행인의 거래은행이 수표소지인에게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영국과 아일랜드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임

* 50, 100, 및 250 파운드의 3가지 보증한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수표보증기능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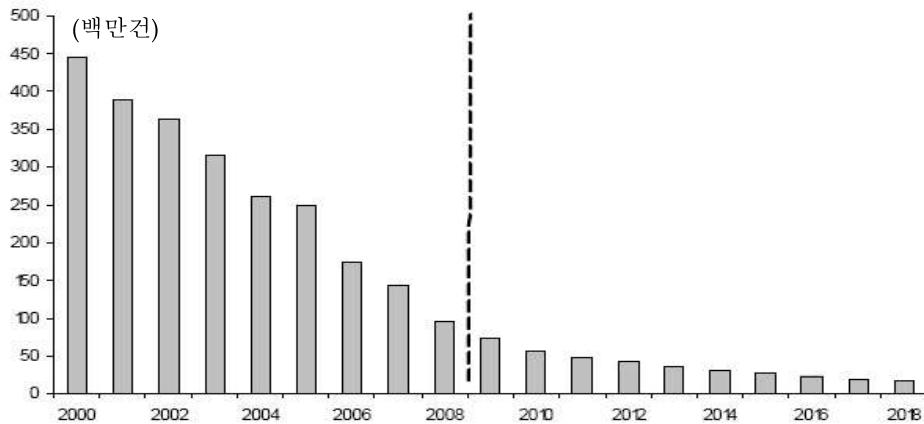
* 2008년말 기준 수표보증카드 59.9백만매중 대부분이 직불카드(91.8%) 및 신용카드(7.2%)에 포함되고 있음

- 수표보증카드제도의 폐지는 수표 및 수표보증카드 이용의 지속적인 감소 및 직불카드 등 대체 지급수단의 등장 등으로 수표보증카드제도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수표보증카드 이용은 2000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년중 수표보증카드 이용규모는 95백만건으로 최근 5년간 70% 감소

수표보증카드제도 이용추이



자료: Payments Council(2009.6)

- 보증수표를 대체하는 직불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이 널리 이용되는 데다 수표보증한도가 높지 않아 이용자들은 동 제도의 실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수표보증카드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수표의 사기, 신용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소비자 및 가맹점이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Payments Council, 2009.6)
 - 2008년중 수표보증카드제도 유지 비용은 45백만파운드인 반면 편익은 35백만파운드에 불과한 데다 매년 순비용이 확대

영국 수표보증카드제도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백만원, 백만파운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용규모	95	72	56	49	42	36	31	27
비용	45	45	42	40	38	36	35	33
편익	35	26	21	18	15	13	11	10

자료: Payments Council(2009.6)

- 수표보증카드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은 주로 카드 또는 현금이 보증수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보증제도가 없더라도 수표를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기타 장표 청산시스템*)

* 기타 장표 청산시스템(Credit Clearing): 수표 이외에 공과금 지로영수증 등 각종 장표의 은행간 교환·청산 시스템으로 비영리회사인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에서 수표청산 시스템과 함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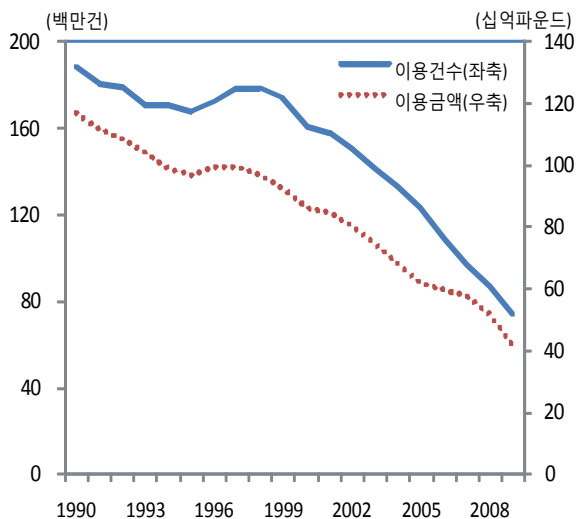
□ 개인 및 기업에 의한 대금결제 용도로 이용되는 수표 이외의 기타 장표 지급수단의 이용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

— 대량출금(direct debit), 인터넷·텔레뱅킹 등 정기적인 대금 납부시스템의 이용으로 기타 장표 시스템 이용이 빠르게 감소

○ 기타 장표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2009년중 74백만건으로 2000년보다 54% 감소

— 2009년중 기타 장표 지급수단 이용규모(건수기준)는 전체 장표 지급수단 이용규모의 약 8% 미만 수준을 차지

영국의 기타 장표 지급수단 이용추이



자료: Payments Council 홈페이지

영국의 장표 지급수단 이용규모

		(백만건, 십억파운드)			
		1995	2000	2005	2009
건 수	수표	2,147	1,820	1,326	876
	기타 장표	168 (7.2)	161 (8.1)	123 (8.5)	74 (7.8)
	합계	2,314	1,981	1,450	949
금 액	수표	1,205	1,330	1,155	871
	기타 장표	97 (7.4)	86 (6.1)	62 (5.1)	42 (4.6)
	합계	1,302	1,416	1,217	912

주: ()내는 기타 장표가 장표 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 지급결제위원회는 기타 장표 청산시스템에 대한 검토(review)를 통해 2018년 수표 청산시스템과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 기타 장표 청산시스템은 수표 청산시스템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다 다양한 대체지급수단이 있어 수표 청산시스템이 폐지될 경우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추후 별도의 검토를 거쳐 기타 장표 지급수단에 대한 적절한 대체지급수단이 충분히 활용되고 제도 폐지에 따른 편익이 유지비용보다 명확히 클 경우에 폐지시기를 확정할 예정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식의 표준화)

□ 2008.5월 발표한 NPP에서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

—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식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대량이체 신청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오류가 발생

□ 지급결제위원회는 2009.6월 비표준화된 계좌번호 양식 이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계좌번호 양식의 모범준칙에 관한 지침”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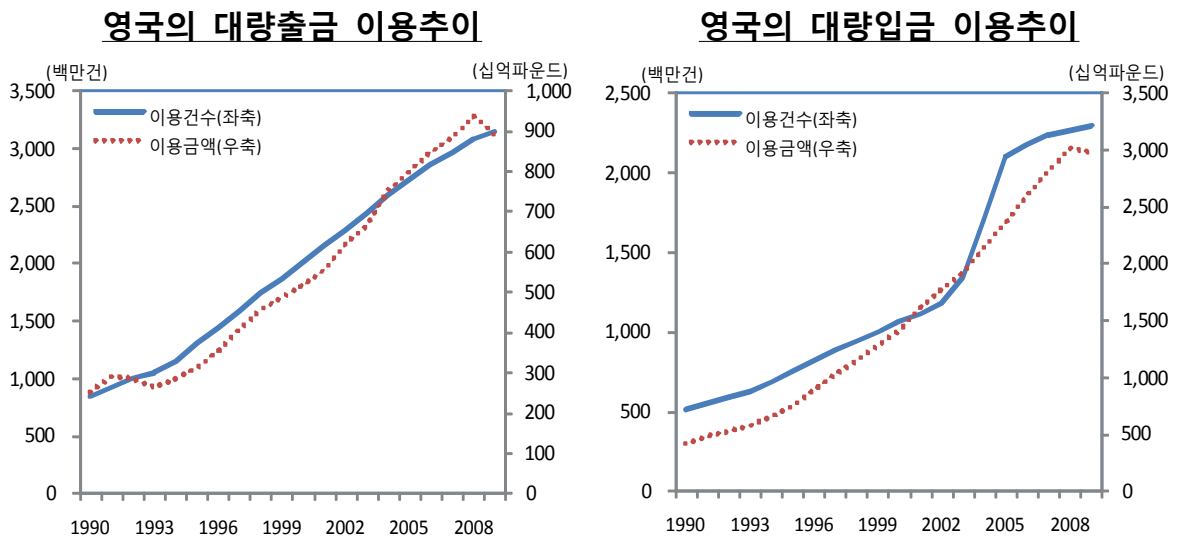
* 표준 계좌번호 양식은 6자리의 금융기관코드(sorting code)와 8자리의 고객 계좌번호(account number), 1자리의 검증번호(modulus check)으로 구성

— 비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시스템 개편시 표준화된 계좌번호 양식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비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동 계좌번호와 연계된 새로운 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mapping system) 대량이체시 이용하여야 함
- 지급결제위원회는 2011년 3년 주기의 국가 지급결제 발전전략 검토시 동 모범준칙의 유용성을 평가할 계획

(대량이체시스템)

- 지급결제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대량 입출금 시스템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이에 따라 대량 입금 및 출금 서비스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지속



자료: Payments Council 홈페이지

① 대량출금(direct debit)

- 2008.5월 NPP에서는 기업 및 고객의 대량출금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효율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

* 주로 케이블TV 요금, 모기지 이자, 공과금, 보험료, 개인연금, 휴대폰 요금 등 각종 정기적인 대금을 고객계좌에서 출금이체하는 서비스

— 현재 대량출금 오류시 기간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대량출금 보증(Direct Debit Guarantee)제도에 대한 기간제한의 필요성을 검토

* 현재는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대금 출금 등의 오류발생시 금융기관이 전액을 고객에게 즉시 보상(open-ended direct debit guarantee)

○ 2008.9월 대량출금 시스템 운영기관인 BACS의 검토 결과 대량출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제한하더라도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객의 출금일 지정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집금 주기를 늘리고 고객앞 출금정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대량출금 서비스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

— 금융기관 직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량출금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

— 또한 기업간 거래시 대량출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입 방안을 검토

② 대량입금(direct credits)

□ 대량입금은 기업 및 정부에서 급여, 연금, 정부 복지 및 거래대금 지급 등 다양한 용도에서 이용

— 약 95%의 정부 복지 및 민간 연금, 93%의 근로자 임금이 대량입금으로 지급

— 인터넷·텔레뱅킹을 통한 개인들의 신용카드 대금납부나 개인간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대량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며 Faster Payments도 대량입금에 포함되고 있음

□ 인터넷·텔레뱅킹시 입금이체 서비스의 경우 부가정보*(reference information)의 정확성 제고 및 지급인-수취인간 지급지시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 및 최소기준 도입방안 등의 과제를 제시

* 현재 BACS 대량입금 시스템은 18자까지 부가정보 입력란을 제공

— 2009.6월까지 입금이체시 부가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 고객 이름 인증, 금융기관간 부가정보의 표준 협약 체결, 부가정보 입력에 관한 고객 교육 강화 등

— 이와 함께 입금이체시 최종 이용자간에 계좌정보 및 부가정보의 전달을 자동화하기 위한 최소기준 도입방안 등을 검토

(2) 혁신 측면

(비접촉 선블카드)

□ 카드, 모바일폰, 키홀더(key fob) 등의 장치에 비접촉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지급수단의 개발

—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비접촉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직불·신용카드를 보급하여 10파운드* 이내의 거래시 PIN 번호없이 사용 가능

* 2010.3월부터 15파운드로 상향 조정(유로지역의 경우 사용한도는 25유로)

— 비접촉카드의 주요 이용대상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자판기, 교통수단 등임

□ 비자·마스터카드 브랜드형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가 직불·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unbanked)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급*

* 2003.7월부터 런던지역에서 주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이용되는 Oyster카드가 대표적인 비접촉 선불카드로 2010.6월말 기준 34백만매 발행

— 기업에서도 급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용도와 해외출장 등을 위해 사용

— 따라서 비접촉 또는 선불카드의 확산은 금융소외자 지원 (financial inclusion)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지급결제위원회는 비접촉 선불카드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비접촉카드 이용의 개방성 및 호환성 제고 등을 위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

— 2010.5월 비접촉 선불카드 시장 현황 및 권고에 관한 보고서 발간*

* “Review of the contactless and prepaid card markets: Summary of findings and actions”, 2010.5

○ 비접촉 선불카드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 시장 및 업계의 발전방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 다만 지급결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비접촉 선불카드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비접촉 선불카드에 관한 일반적인 소비자 정보의 개발 및 제공(영국 카드협회와 협력 필요)
 - 비접촉 선불카드 시장발전을 위한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 모바일 비접촉 포럼(UK Mobile Contactless Forum)과의 협력
 - 비접촉 선불카드의 표준 및 호환성 제고방안 연구
- 지급결제위원회는 2011년말까지 비접촉 선불카드 시장의 발전 현황을 재검토할 계획

(모바일 결제)

□ 모바일 결제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용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지급결제(mobile payment):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결제개시부터 완료과정중에 모바일 기기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지급행위로 정의

- 모바일결제가 향후 현금의 주요 대체 지급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모바일결제는 지급서비스 기관, 모바일폰 네트워크 운영기관, 모바일폰 제조업자, 시스템 제공기관(VAN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조와 협의 필요

□ 지급결제위원회는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 제정과 관련한 지급결제위원회의 역할, 대체지급수단으로서 모바일 결제의 역할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2009.12월 지급결제위원회는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진화 및 개별 기관간 경쟁적 발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지급결제위원회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는 시기상조라고 평가
 - 현재 업계에서는 모바일폰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간 이체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
- 향후 모바일 결제시장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을 평가할 계획

(E-invoicing)

- E-invoicing은 기업간 거래대금 결제와 결제 이전 단계인 물품구매와 대금청구 과정을 통합 및 자동화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큼
 - 유럽위원회는 2008년 “유럽 E-invoicing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E-invoicing)을 구성하여 E-invoicing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체계와 표준을 마련
- 지급결제위원회는 E-invoicing 표준화를 위한 정부, 기업 등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율·자문 및 유럽위원회 또는 국제기구의 E-invoicing 체계 수립에 기여할 계획
 - 지급결제위원회는 매년 E-invoicing 추진상황을 보고할 예정

(3) 기타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 교육)

□ ID 도난이나 전자결제 정보관리 등의 중요성, 전자지급수단의 선택 및 이용방법, 전자지급수단의 유용성에 대한 중소기업 대상 홍보 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급결제위원회는 정부, 금융감독청, 은행협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지급결제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추진

* 화폐의 유통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작동방식, 카드 등 각종 지급수단의 이용방법, 각종 지급결제시스템의 이용비용, 지급수단이용시 사기 및 신원보호 방안, 국가간 결제 및 SEPA 결제, 지급수단별 이용자의 책임/위험 등

— 2008년부터 지급결제 관련 교육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소외자 지원)

□ 금융소외자* 지원(Financial Inclusion)은 모든 사람이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개설·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급결제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

* 장애인, 저소득층, 노령층, IT 미숙련자 등

— 자금의 지급 및 수취가 가능한 기본 은행계좌(Basic Bank Account)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2008/09년중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성인은 1.5백만명으로 전체의 3% 수준으로 나타남

영국의 결제성계좌 미보유¹⁾(unbanked) 현황

(천명, %)

	2002/03	2004/06	2006/07	2007/08	2008/09
결제성계좌 미보유 가계 (비중)	2,570 (10)	1,370 (6)	1,410 (6)	1,280 (5)	1,140 (4)
결제성계좌 미보유 성인 (비중)	3,570 (8)	1,880 (4)	1,920 (4)	1,750 (4)	1,54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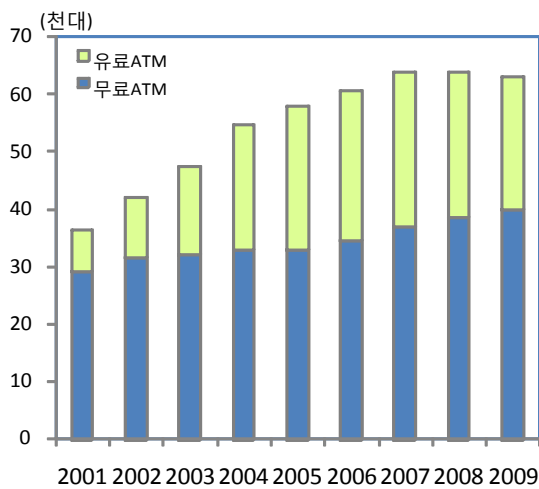
주: 1) 자금의 지급 및 수취가 가능한 은행의 current account나 basic bank account가 없는 경우를 의미

자료: 영국 HM Treasury(2010.12)

—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ATM*의 보급 확대

- 2009년말 영국에서 운영중인 63,000대의 ATM중 현금인출 수수료가 없는 ATM이 4만대이며 현금인출 이용자중 97% 정도가 무료로 ATM을 이용하고 있음

영국의 무료ATM 설치대수



영국의 무료 ATM 현금인출 규모

	2001	2005	2007	2008	2009
무료 ATM (백만건, %)	2,135 (98.2)	2,591 (96.0)	2,723 (96.0)	2,775 (96.5)	2,824 (96.8)
유료 ATM	39	108	113	101	92
합계	2,174	2,699	2,836	2,876	2,916

자료: 영국 Link 홈페이지

— 대량출금 서비스의 이용 편의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 마련*

* 예를 들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자동이체에 대한 홍보 및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량출금 서비스 이용을 유도(Financial Inclusion Taskforce, "Report on direct debit energy payments", 2008.12)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지급수단 도입의 편익 검토 등

- 지급결제위원회는 재무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T/F*”(Financial Inclusion T/F) 등과 협력하여 지급결제분야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 모든 사람이 은행서비스, 대출, 무료 금융 자문, 저축 및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4월 재무부에서 설립한 독립기구로 2011.3월까지 운영 예정임

— 특히 2009.10월 “금융소외자 지원정책(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마련하여 금융소외자 포용을 위해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변경시 고려해야 할 기본지침과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도입시 준수해야할 기준을 제시

(사기방지 및 보안 강화)

- 최근 카드, 수표, 온라인뱅킹 등 은행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기 손실이 꾸준히 증가

— 2008년중 지급수단 사기관련 손실이 카드(6.1억 파운드)를 중심으로 7.0억 파운드까지 상승

영국의 지급수단 사기(fraud) 손실 현황

(백만파운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카드 ¹⁾	504.8	439.4	427.0	535.2	609.9	440.3
수표	46.2	40.3	30.6	33.6	41.9	29.8
온라인 뱅킹	12.2	23.2	33.5	22.6	52.5	59.7
합계	563.2	502.9	491.1	491.4	704.3	529.8

주: 1) 전화·인터넷·메일을 통한 사기, 위변조(counterfeit), 분실·도난, ID도용 등
 자료: UK Cards Association(2010.3)

- 이에 따라 지급수단의 사기방지 및 보안 강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
 -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 도입시 보안성 요건 강화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원격거래의 인증(authentication) 방식 개선
 - 생체인식기술(biometrics)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보안 강화
 - 금융기관과 정책당국간 토론 및 협조를 위해 사기 정보 등의 자료 공유 확대 필요성

- 지급결제위원회는 정책당국과 협력하여 지급결제관련 사기와 보안 위협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지급결제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사기방지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지도
 - 매년 지급결제분야 사기 동향, 사기방지 및 보안강화 대책 및 과제 등을 발간
 - 또한 2009.6월 공공 및 민간기관간 지급결제분야 사기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위원회 산하에 사기·보안관련 전략그룹을 설립

(지급결제시스템의 표준화)

- 2008.5월 지급결제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호환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 기본원칙을 마련

- 가능한 경우 글로벌, 유럽, 국내 순서로 표준을 도입
 - 은행 및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유럽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 표준 설계시 고객의 거래개시, 본인확인·인증, 고지/확인 등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의 모든 단계를 포괄
 - 다양한 표준제정 기구간의 융합 또는 통합을 지향
 - 표준개발시 기업 또는 이용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지급결제위원회는 국내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을 SEPA에서 이용하고 ISO에서 개발한 유럽의 메시지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화 이행계획을 추진
- 1단계: 2008년말까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 영역 및 계획 수립
 - 2단계: 2009년 중반까지 표준화 이행의 적절성 평가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행일정(timeline) 확정

2. 캐나다

가. 개요

(추진 개요)

- 2010.2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향후 10년간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2020년까지 완수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장기 발전전략(Vision 2020)을 수립**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는 「캐나다 지급결제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자국내 거액 및 소액 청산·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규정(By-law, rule 등) 제정 권한도 보유

** CPA,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2010.2

- 2008년 주요국의 사례조사, 2009.5월 발전전략 초안 마련 및 관련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 CPA의 발전전략은 현재 및 미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산·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음

-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CPA의 청산·결제시스템 유지

- CPA를 통한 지급거래의 유연성, 혁신,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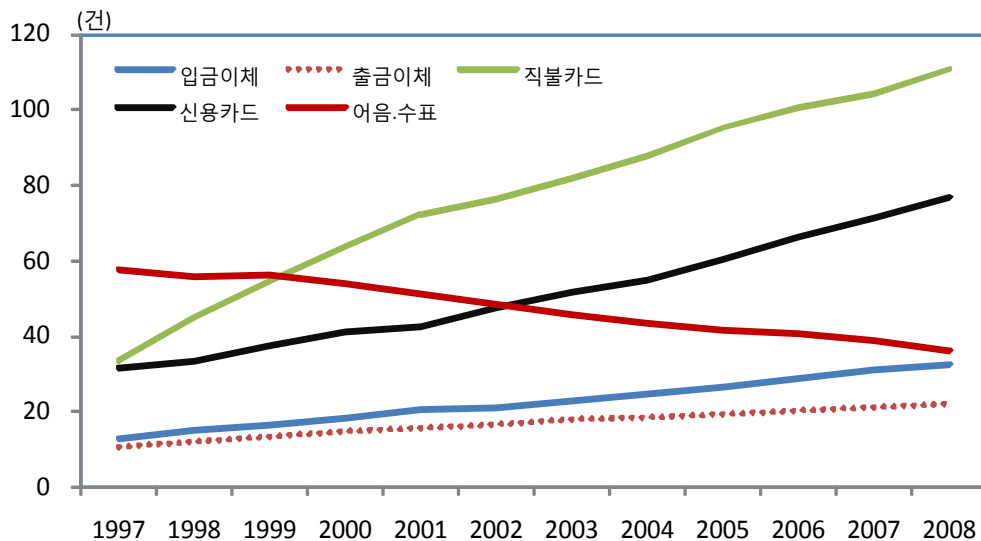
- 신뢰성있고 안전하고 건전한 지급거래가 이루어지는 청산·결제 시스템 제공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산·결제시스템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간 호환성이 가능한 공통의 규칙과 기준의 개발에 중점

(추진 배경)

- 최근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의 빠른 확산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의 지급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등장 등을 배경으로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기전략의 필요성 증대

캐나다의 지급수단별 이용규모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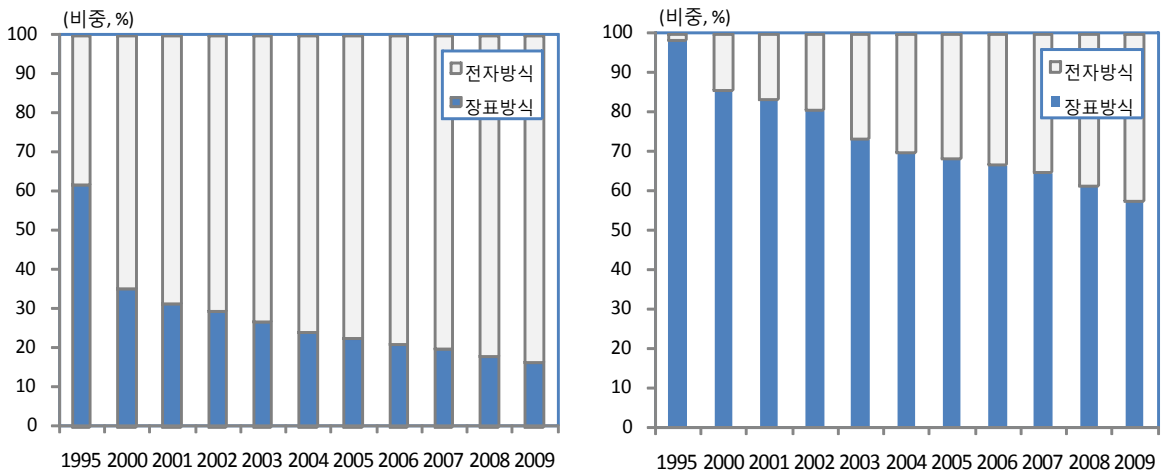


주: 1인당 이용건수 기준

자료: BIS,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각호

- 지난 20년간 비현금 지급수단(건수 기준)의 이용증가로 2009년 중 84%가 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표 이용비중은 16%로 하락
 - 한편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표 등 장표지급수단이 2009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의 57.5%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
 - * 이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5만 CAD 이상의 거액수표 이용비중이 큰 데 주로 기인

캐나다의 장표·전자 지급수단 이용비중 추이
 <건수기준> <금액기준>



자료: 캐나다 CPA 홈페이지

- o 또한 현금 및 수표 이용 감소 추세와 함께 CPA를 거치지 않는 소액거래의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캐나다 소액결제시장 발전 전망

		2004	2009	(십억건) 2014(전망)
현금	현금	8.5 (51)	8.7 (45)	8.7 (39)
CPA거래	수표이용	1.2	0.9	0.7
	직불카드	2.4	3.1	2.9
	EFT(전자자금이체)	1.1	1.6	2.0
	소 계	4.7 (28)	5.6 (29)	5.6 (25)
CPA 이외 거래	자행거래(On-Us)	1.6	1.9	2.1
	신용카드	1.7	2.5	3.7
	이메일 자금이체	0	0.01	0.03
	직불카드	0	0	1
	선불카드/전자지갑	0.2	0.5	1
소 계	3.5 (21)	4.91 (26)	7.83 (36)	
합 계		16.7 (100)	19.16 (100)	22.08 (100)

주: ()내는 구성비

자료: CPA(2010.9)

- Paypal 등 다수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등장 등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성도 증대

- 이와 함께 국제교역의 확대 및 금융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간 송금 및 결제서비스의 증가로 국제표준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

나. 부문별 추진계획

(전자지급수단의 발전 촉진)

-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년간 수표 이용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10억건 정도의 수표가 이용되고 있음

캐나다의 수표 이용규모 추이

(백만건, 십억CAD)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소액 수표	건수	1,597	1,359	1,110	1,088	1,053	997	930
	금액	748	1,136	1,127	1,139	1,153	1,136	1,050
	건별금액	0.5	0.8	1.0	1.0	1.1	1.1	1.1
거액 수표	건수	6	6	7	8	8	8	7
	금액	15,912	3,400	1,929	2,060	2,166	2,058	1,747
	건별금액	2,577	532	258	263	265	261	255

주: 1) 소액 및 거액의 구분기준은 5만CAD
 자료: 캐나다 CPA 홈페이지

- 수표 이용을 축소하고 장표방식 지급수단을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수표 대체지급수단을 발굴하고 수표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전자자금이체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기존 및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

- 직불카드 거래(POS transaction)를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확충하고 전자대금납부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 모바일 결제와 EMV* 칩카드 등 신규 지급수단의 청산·결제관련 표준 및 규칙 개발

* EMV는 Europay, MasterCard, VISA의 약어로 동 3사가 1995년에 개발한 IC카드 또는 칩카드의 운영을 위한 국제표준을 의미

(지급결제 처리방식의 효율성 제고)

□ 청산·결제시스템 처리절차의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급거래관련 국제표준을 도입할 계획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송금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거액 및 소액 결제의 STP를 개선

- 국내 지급메시지 표준에 ISO 20022, EPN 820* 등 국제표준을 수용함으로써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을 제고할 계획

* 미국의 ACH운영기관인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의 지급거래 관련 메시지 표준

- 이와 함께 ISO, SWIFT, Global Payments Forum(GPF) 등의 국제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개발 작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

□ 익일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소액지급거래의 당일중 또는 실시간 결제방식(real time payment) 도입 등을 통해 이체자금의 조기 이용가능성을 확대할 계획

- 영국의 Faster Payment 서비스 등과 같이 온라인 및 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당일중 금융기관간 차액결제를 완료하고 수취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도입
 - 다만 실시간 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 거래오류 및 수작업 처리문제 등과 관련한 리스크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

(CPA의 청산·결제시스템 관련 법체계 개선)

- 급속한 지급결제환경 변화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협회 관련 지배구조 및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등에 대한 유연한 법체계*를 갖출 필요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련 법체계는 「캐나다지급결제법」과 이를 토대로 캐나다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하는 by-laws, rules, guidelines, standards 등으로 구성

** CPA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혁신, 효율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과 기준 제정에 필요한 보다 높은 차원(high-level)의 “원칙(principles)”을 사용할 필요성을 검토중

- 「캐나다지급결제법」에 의한 현행 지급결제협회 지배구조는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빠른 확산 및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등장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CPA를 거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전자방식 거래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지급서비스기관*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통일된 법체계가 없는 상황임

* 국제송금서비스업체인 MoneyGram 또는 Western Union 등

- 반면 CPA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인해 CPA 운영 시스템의 혁신이 지체되고 있으며 여타 민간 지급결제시스템과의 경쟁에서도 뒤지고 있음
 - 또한 캐나다지급결제법 체계의 경직성으로 CPA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혁신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음
 - 한편 CPA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및 절차가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CPA는 직·간접 참가기관 계층구조의 변경 필요성, 지급서비스기관이나 송금서비스업자 등의 신규 참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구조, 규정 및 규칙의 개정방향을 검토할 계획
- 청산·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처리규칙 등 리스크 관리체계 검토
 - CPA 직접 청산기관에 대한 기준, 계층구조(tiering structure)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원칙 중심의 규칙이 CPA, 회원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편익 평가
 - CPA 회원 가입기준, 지배구조, 채용조달방식 등 「캐나다지급결제법」에 관한 검토 및 권고안 마련
 - CPA는 2012년으로 예정된 재무부의 “금융법 체계 검토” 일정*에 맞춰 「캐나다지급결제법」의 개정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

* 캐나다 재무부는 매 5년마다 금융법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거래·청산·결제 관련 IT시스템의 확충)

- 향후 수년간의 전자지급수단 발전에 대응하고 처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청산·결제관련 IT시스템을 확충·보완하기 위한 장기 전략 및 계획을 수립
 - CPA의 IT시스템은 일평균 1,730억 CAD를 청산·결제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리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결제규모의 확대 및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CPA의 부가서비스 개발·확대)

- 지급결제처리 방식과 시스템의 복잡성 및 결제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회원 및 관련기관과 청산·결제시스템 관련 이슈를 협의하는 한편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할 계획
 - 금융기관, 이용자, 규제당국 및 해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의 포럼 등을 통해 청산·결제시스템 관련 현안과제를 논의
 - CPA회원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캐나다의 소액결제 발전계획

프로젝트	내용	추진계획			
		2009	2010	2011	2012
1. 전자지급수단					
- 장표 지급수단의 전자지급수단 이행(전략)	수표 대체지급수단의 이용 촉진 · 국내 데이터송신 표준화 추진 · 수표 대체를 위한 전자자금이체시스템(AFT) 활용 방안 연구				
- 전자지급수단 확대(전술)	· 출금이체 · POS 규정 확대 적용 · 전자요금납부 체계 개발				
- 신규 지급수단 개발(전략)	· 모바일지급수단 연구 · PIN없는 POS지급방안 · EMV 칩카드 활용방안				
2. 국내의 호환가능 표준 도입					
- 국내 송금데이터 표준(전술)	지급 및 송금관련 정보를 기관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환가능 표준 개발 · 송금데이터 표준 검토 · 거액 및 소액결제의 STP 방안 연구				
- 국제 표준 도입(전략)	국제 지급거래를 위한 송수신 메시지 표준 도입 · 국내외 표준간 연계				
3. 지급결제 관련 법체계 및 시스템 개선					
- CPA 법 및 규제 체계 개선(전략)	· 지급결제산업 경쟁여건 평가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 검토 · CPA 회원가입, 지배구조, 채용조달 구조 검토				
- 청산·결제주기의 단축 시스템 개발(전략)	익일 차액결제를 당일 또는 일중 결제로 조기화하는 방안 마련				
4. 부가서비스 개발					
- 사기 모니터링(전략)	보안관련 이슈 및 사기 동향 모니터링				
- 지급결제 교육/연수(전략)	청산·결제시스템 관련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자료: CPA(2009.5)

3. 호주

가. 개요

(추진 개요)

- 2008.12월 지급결제산업의 자율규제기관인 호주지급결제협회(APCA)는 대량이체, 수표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의 소액결제 발전전략*을 수립**

* APCA, “Low Value Payments: An Australian Roadmap”, 2008.12

** 소액결제(low value payments)는 일반적으로 대량이체(bulk payment)와 수표를 의미하는 호주 지급결제업계의 용어로서 현금, 카드, 거액결제(RTGS)는 제외됨

- 2007년 APCA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008.5월 발전전략에 관한 잠정보고서 발표, 6월 세미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8.12월 APCA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 발전전략의 목표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임
 - 특히 이용자들의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참가기관들의 사업영역 확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제공,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지원
- 발전전략의 주대상은 대량이체, 수표 등의 소액결제시스템이며 신용·직불카드 시스템은 부차적으로 고려*

* 호주에서는 호주중앙은행(RBA)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신용·직불카드 및 ATM 시스템에 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동향, 2010.6” 참조.

호주의 주요 소액결제(low value payments)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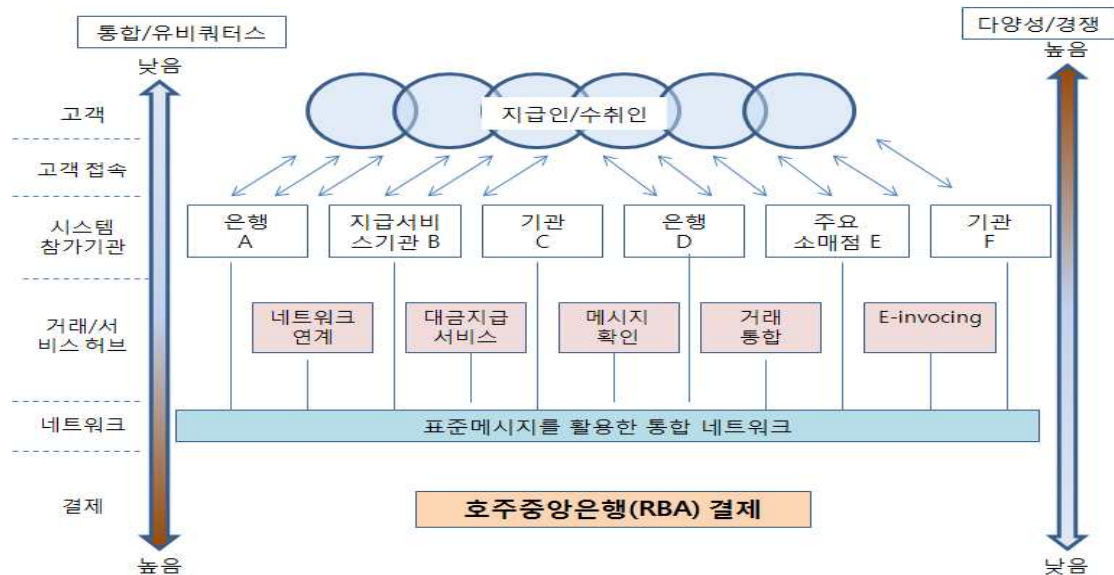
	대량입금 (Direct Credit)	대량출금 (Direct Debit)	BPAY	수표
고객 접속	파일전송 온라인뱅킹 인터넷뱅킹	파일전송	폰·인터넷 뱅킹	수표책 지점 통해 입금
거래정보	18자 이내 거래 정보 구매자금	지급인 정보	청구기관번호, 고객고유번호	-
청산정보	BECS(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		차액포지션만 BECS에 통합	APCS (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결제정보	거액결제시스템인 RITS(Reserve Bank Information and Transfer System)를 통해 익일 이연차액결제			
네트워크	양자간 연계		중앙허브를 통 해 연계	양자간 연계
거래 편의성	산업전반에서 포괄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음			

자료: 호주 APCA(2008.12)

□ 발전전략은 2018년까지의 소액결제시스템 발전전망, 소액결제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경쟁 및 협력 관계, 시스템 개발 등 향후 수년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 한편 단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시장의 경쟁상황, 기술 및 기타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전략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생태구조



- 한편 2009.3월 호주지급결제협회(APCA)는 지급결제시스템내 경쟁과 효율성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지급결제포럼”을 설립·운영*

* 지급결제포럼의 사무국 업무는 APCA가 수행.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호주의 지급결제포럼 개요” 참조.

- 또한 2010.5월 호주중앙은행(RBA)은 APCA와 별도로 향후 5~10년간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위해 정책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협력·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2011년말까지 검토하기로 결정

- 최근 현금 등 지급수단의 이용현황, 호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혁신동향 및 촉진요인, 호주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필요성, 지급결제산업내 상호협력의 장애요인 및 협력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

- 이를 위해 주요국과 비교한 호주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 및 혁신추세 분석,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이용 서베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기업·소비자·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활용할 예정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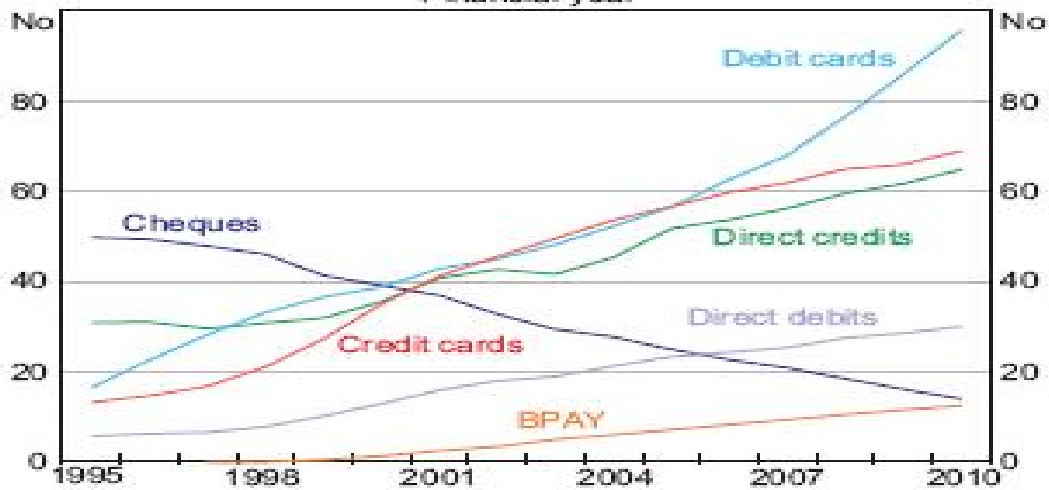
- 수표 이용의 지속적인 감소, 개별 기관 양자간 네트워크 연계방식의 비효율성, 결제규모 증가에 따른 차액결제리스크 증대 등 전통적인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 증대

-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부문의 다양한 요구 및 지급결제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대

① 수요측면

- 1995년부터 수표 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존의 장표 지급수단에서 전자 지급수단으로의 이행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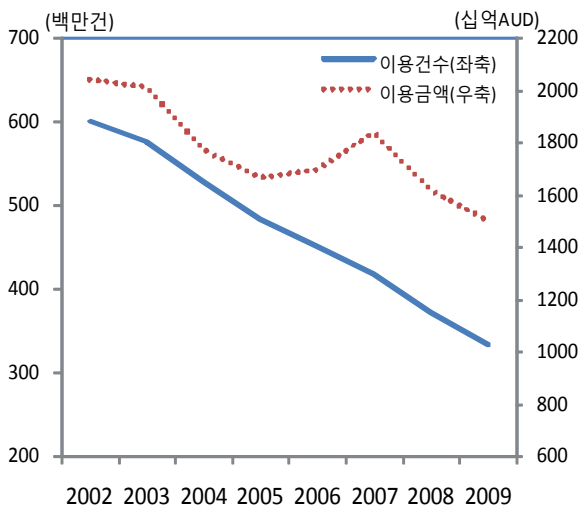
호주의 지급수단별 이용추이(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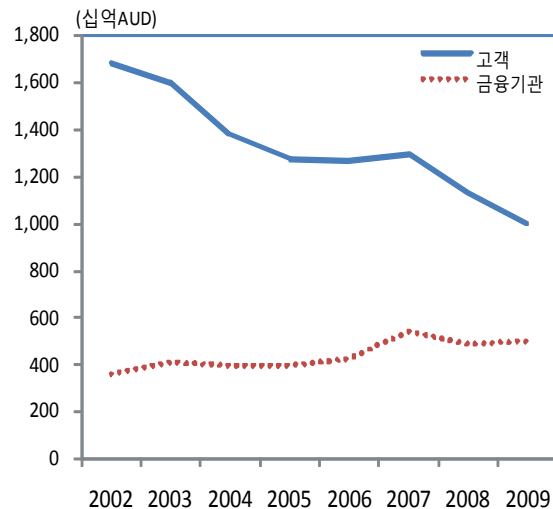
자료: RBA(2010.9)

- 1995년 비현금 지급수단의 50%를 차지하던 수표가 최근 들어 10% 미만으로 급락

호주의 수표 이용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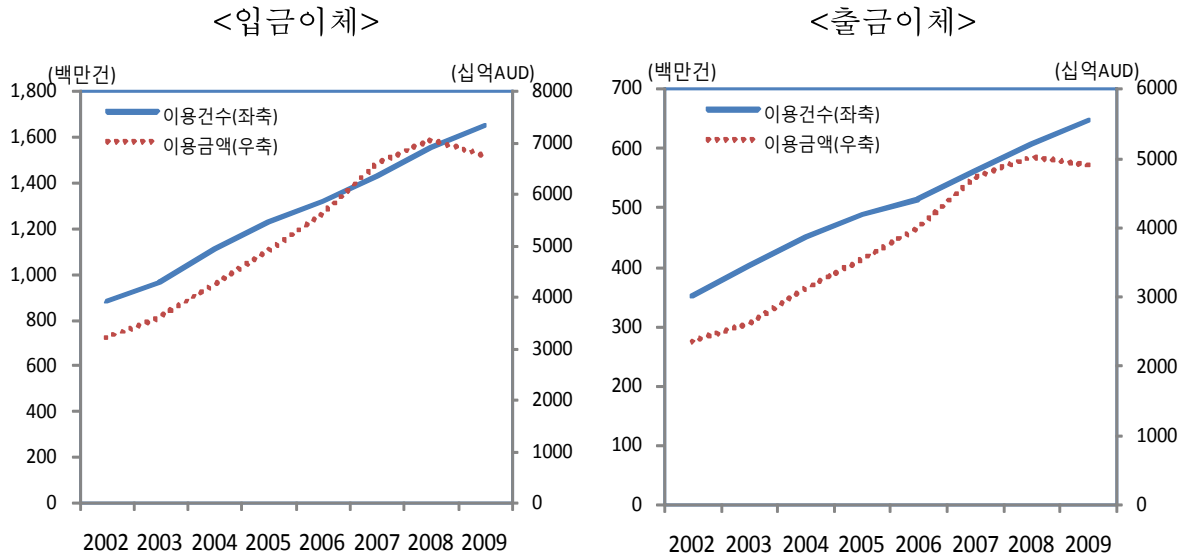
호주의 수표종류별 이용금액 추이(연간)



자료: RBA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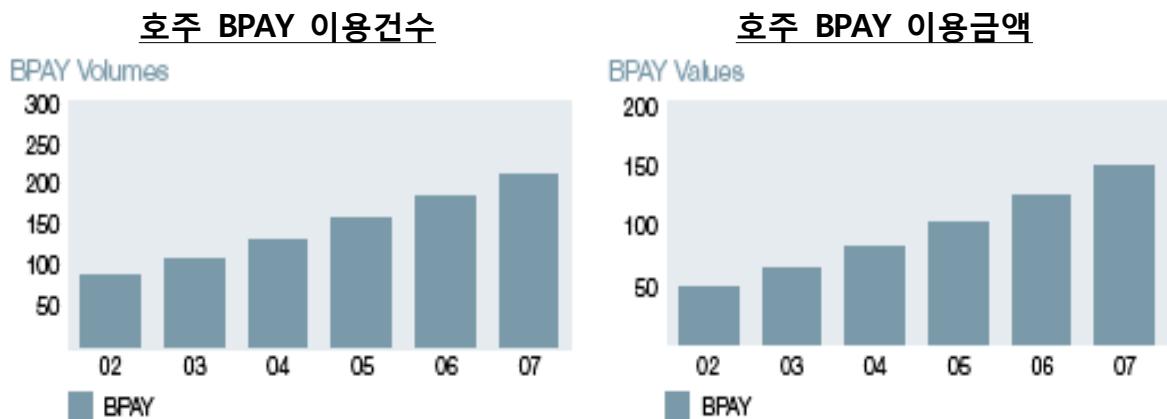
- 한편 대량이체 시스템은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호주의 대량이체 시스템 이용추이



자료: RBA 홈페이지

- 1997.11월 도입된 소비자의 대금자동납부시스템인 BPAY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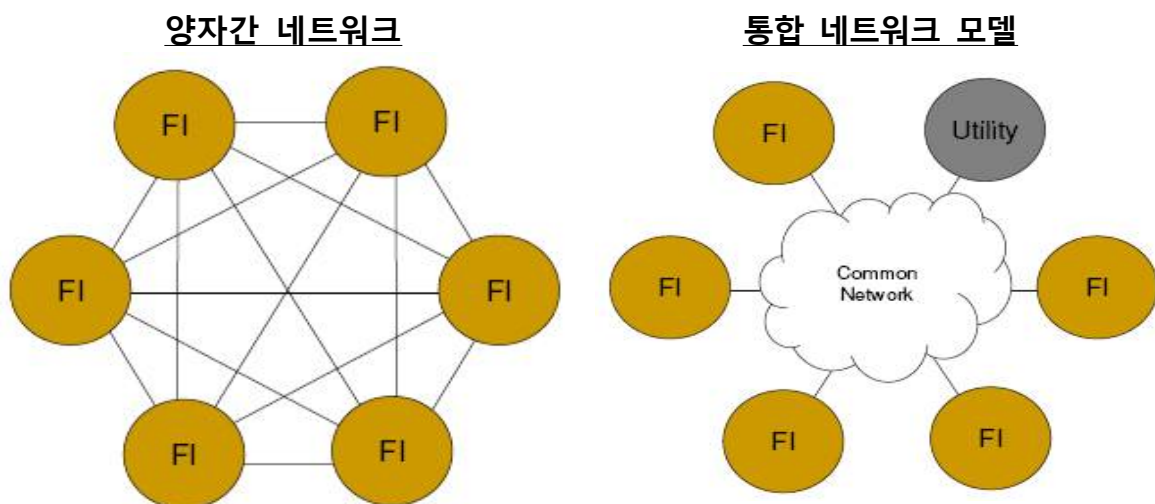
자료: APCA(2008.5)

- 지급지시의 자동화, 표준화, 통합, 대사확인(reconciliation) 등 기업부문의 STP에 대한 요구 증대

- 자금이체의 적시성, 지급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자동화 등 소비자의 요구 증대

② 공급측면

- 지급메시지 관련 국제표준인 ISO 20022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호주 지급결제시스템내 새로운 메시지 표준의 도입 필요성 증대
- 기존의 금융기관 양자간 거래정보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이 커진 데다 인프라 기술의 갱신주기(lifecycle) 도래 등으로 금융기관 공동의 통합 네트워크 개발 필요성 증대
 - 호주에서는 수표교환, 대량입금 및 출금 정보의 교환을 위해 개별 기관간 약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계해야 하는 구조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양자간 거래처리를 위한 X.25방식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료



자료: RBA(2008.5)

- 결제전수 및 금액의 증가와 다양한 지급서비스 기관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개방성 확대 등으로 인한 결제리스크 증가
 - 특히 전자지급수단 및 대량이체 시스템(BECS)의 지속적인 증가로 익일 차액결제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

나. 추진계획 및 현황

(금융기관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 2009년부터 기존의 금융기관 양자간 연계방식인 소액결제 정보 교환 네트워크(X.25 방식)를 대체하여 IP 접속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통합 네트워크인 COIN*(Community of Interest Network) 구축을 추진

* 기존의 소액결제 네트워크가 X.25 프로토콜 기반의 양자간 연계방식인 반면 COIN은 IP기반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활용하여 개별 참가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여러 참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네트워크 접속방식

- 2010.3월부터 10개의 대형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인 APCS, BECS, CECS 거래*의 지급결제 데이터를 COIN을 통해 송수신

* APCS는 수표, BECS는 대량입출금 이체, CECS는 직불카드를 이용한 ATM/EFTPOS(Electronic Fund Transfer of Point of Sale) 거래를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 전체 수표 및 대량이체 시스템 참가기관*간 연계는 2011.6월까지, ATM/EFTPOS 시스템 참가기관간 연계는 2011.12월까지 완료할 계획

*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APCA의 회원은 은행, 건축대부조합, 신용조합, 호주중앙은행 등 80개 기관임

- 장기적으로는 대량이체, 카드, 거액시스템(High Value system) 등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네트워크간 통합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

(차액결제리스크 개선)

- APCA는 2009년부터 대량이체시스템인 BECS의 청산·결제 시점의 조기화 및 고객의 자금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호주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RITS를 통해 거래익일 오전 9시에 다자간 차액결제(9 am batch)됨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노출*

- * BECS의 경우 금융기관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당일 고객계좌에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익일 오전 9시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APCA는 영국의 Faster Payment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당일 실시간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검토중임

- 호주중앙은행은 2009년부터 APCA와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노출기간을 단축하고 운영리스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이체, 수표 등 소액거래의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RITS 개선 계획(Low-value Payments Feeder)을 추진하고 있음

- * 다자간 차액결제가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리스크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중 차액결제를 여러 번에 걸쳐 처리할 계획

(거래정보 및 청산서비스 표준 도입)

- 2009년부터 지급결제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0022의 호주 지급결제시스템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량이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국제 메시지 표준으로 전환할 계획
 - APCA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국제표준인 ISO 20022와 호주에서 사용중인 표준간의 차이를 비교분석(standard gap analysis)
 - 2011년중 ISO 20022 이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및 이행가능성 평가 예정

(수표감소 대응방안 마련)

- APCA는 수표 이용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수표의 미래에 대한 검토 및 서베이를 수행
 - 개인 및 기업이 수표를 이용하는 이유*, 기존 지급수단이 수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 * 2010년 서베이에 의하면 노인 및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8%의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수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수표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음(APCA, Payments Monitor, 2010.3Q)

- 향후 APCA는 수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전략 수립 및 수표 처리 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계획

(지급카드의 보안 강화 및 사기방지 대책 마련)

- 호주의 지급수단 사기관련 손실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중 사기 손실액은 신용카드(1.55억 호주달러)를 포함하여 2억 호주달러로 전체 거래금액의 0.01% 수준

호주의 지급수단 사기(fraud) 손실¹⁾ 현황

(백만 AUD, %)

	2006	2007	2008	2009	2010
수표	40.7	23.9	9.8	13.3	16.9
직불카드	14.5	14.1	15.5	19.1	27.9
신용카드	87.4 (0.0389)	90.0 (0.0381)	135.7 (0.0517)	148.2 (0.0601)	155.5 (0.0586)
합계	142.6 (0.0068)	128.0 (0.0058)	160.9 (0.0072)	180.7 (0.0090)	200.2 (0.0099)

주: 1) 전년 7월~금년 6월중 기준

2) ()내는 거래금액대비 손실비중

자료: 호주 APCA, Payment Fraud Statistics, 각호

- APCA는 지급카드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위변조 등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중 EMV 칩카드 거래가 가능한 EFTPOS 단말기 보급을 거의 완료하고 향후 ATM기 교체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이와 함께 가맹점의 단말기 보안 지침 및 카드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등을 발간하고 있음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선 계획

프로젝트	내용	시행일정	완료시기
1. 네트워크 구조			
1) 네트워크 갱신 (기술적)	X.25에서 IP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 전환에 대응하여 COIN-기반 네트워크 도입지원	추진중	2009년초 도입결정. 2009년 말 / 2010년초 예정
2) 최소호환성 요건(기술적)	APCS, BECS, CECS의 최소 네트워크 연계 표준을 위한 규정체계 정비	추진중	2009년초 완료 예정
3) 장기 네트워크 개선(전략)	1.1 완료후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네트워크간 통합방안 마련 * 대량입금, 카드, BPAY, HVCS(Hight Value Clearing System) 등	2009년 말 이전	미정
2. 결제절차			
1) BECS 결제방식(기술/전략)	BECS 결제리스크 감축 및 청산·결제·고객앞 자금이체의 적시성 강화 방안 마련	2009년초	2009년 중반까지 협의완료
2) 결제용량 확대(RBA, 전략)	호주중앙은행의 RITS 결제용량 확충(소액결제시스템의 당일 결제 시행에 필요)	추진중	2010년 중반(파일 전송 및 다자간 일괄처리)
3. 거래정보 및 청산절차			
1) 국내/국제 표준 일치(전략)	국내 메시지표준과 ISO 20022와의 호환가능성 분석	2009	2010년 중반
2) 대량입금 정비(전술)	대량입금 시스템의 거래승인절차 등 정비	2009	2010년 중반
3) 신규 국제메시지 표준 도입(전략)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 메시지 표준 이행여부 평가	2009~2010	2011년 중반
4. 장표 지급수단(전략)	장표 지급수단 감소추세에 대응한 장기 전략(대체지급수단 개발 및 처리비용 절감방안)	2009	2010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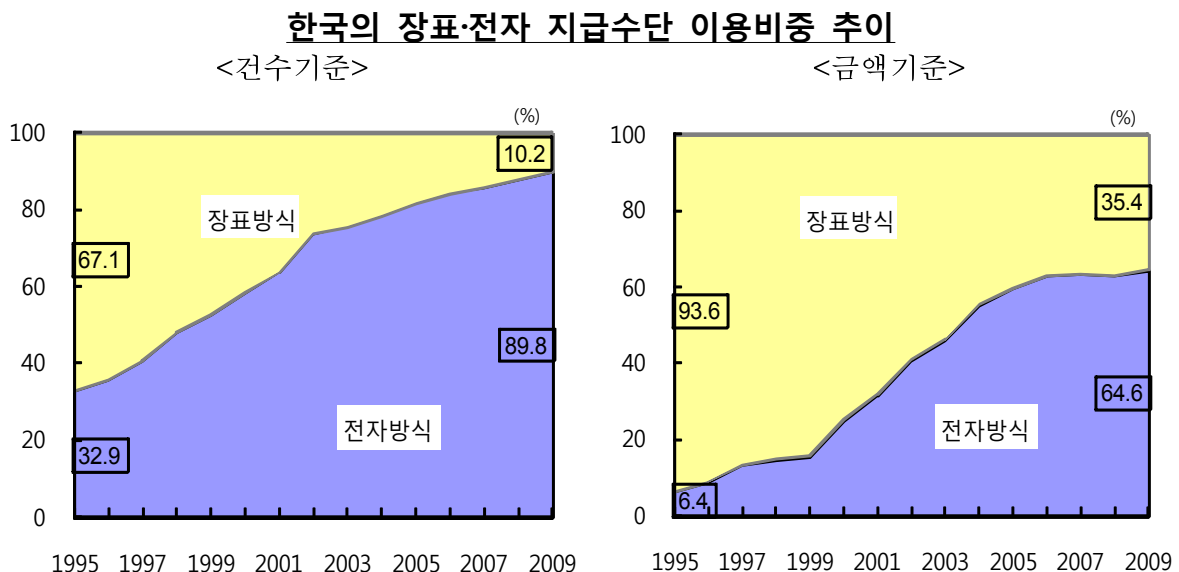
자료: APCA(2008.12)

IV. 시사점

(국내 현황)

□ 우리나라도 최근 15년간 어음·수표 등 장표지급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인터넷뱅킹, 카드 등 신규 전자지급수단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구조변화를 겪고 있음

— 비현금지급수단중 어음·수표 이용비중(건수 기준)이 1995년 67.1%에서 2009년 10.2%로 감소한 반면 전자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같은 기간중 32.9%에서 89.8%로 급증



주: 1) 발행창구제시 어음·수표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1980년대 중반부터 각종 소액거래의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신규 지급수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

*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현황은 <참고 5> 참조

—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구축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소액결제시스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대 초반에 구축이 완료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체계의 평가 및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필요성이 증대
 - 주요국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사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도입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
 -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수립시 운영기관과 금융기관 뿐 아니라 주이용자인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우선 이용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어음·수표 등 장표지급수단의 감소추세를 점검하고 수표 처리비용의 절감 및 대체지급수단의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유도할 필요
 - 특히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및 새로운 지급수단의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다음으로 국가간 거래 및 결제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호환성 제고 방안을 모색
 - ISO 20022 등 지급결제 메시지 국제표준 등의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 또는 호환 가능성을 점검하여 추진
- 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위변조 및 사기 방지를 위한 보안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와 함께 각종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서비스 이용방법 및 사기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
 -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 손실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공표할 필요
-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시점 조기화 또는 당일중 차액 결제방식 도입 등을 통해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

<참고 1>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경과

시기	주요 내용
1998.11월	재무부장관, Don Cruickshank(당시 Scottish Media Group 의장) 주도하에 Banking Review팀을 설립하여 영국 은행산업의 혁신, 경쟁, 효율성 현황에 관한 검토를 요청
2000.3월	Don Cruickshank, “영국 은행업의 경쟁(Competition in UK Banking, 일명 Cruickshank 보고서)”에 관한 검토보고서 제출 - 네트워크효과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내 경쟁이 크게 미흡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법 개정 등을 통한 정책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
2001.8월	재무부, Cruickshank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급결제시스템내 경쟁(Competition in Payment Systems: A Response to Consultation)” 발간
2003.4월	정부, 경쟁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청(OFT)에 지급결제시스템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기로 결정
2003.5월	공정거래청(OFT), 지급결제시스템 시장의 발전이 경쟁, 효율성 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보고서(UK Payment Systems) 발표 - 금융기관의 청산시스템 참가의 개방성, 청산시스템에 의한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의 제한 여부, 소액결제시스템 수수료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
2003.11월	재무부의 예비예산안 보고서 OFT가 향후 4년동안(2004.6월~2008.6월)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004.3월	공정거래청, 지급결제시스템 T/F(Payment Systems Task Force) 구성(2003.11월 재무부의 요청을 반영) - 설립목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 효율성, 혁신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공정거래청이 의장 및 사무국 업무를 맡고 영국지급결제협회(APACS), 은행협회, 건축대부조합협회, BACS, LINK, MasterCard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소비자, 가맹점 및 기업 대표 등이 회원이며,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옵저버로 참석 -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BPSL* Innovation WG, BACS 참가 및 지배구조 WG, 유럽 WG, Cheque WG(2005.10월) 등의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 BACS Payment Schemes Limited

시기	주요 내용
2005.5월	공정거래청, 지급결제시스템 T/F, 제1차 연차보고서 발간
2005.12월	공정거래청 및 은행, 2007년말까지 대량이체시스템인 BACS에 당일 청산·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s를 도입하기로 결정
2006. 5월	공정거래청, 지급결제시스템 T/F, 제2차 연차보고서 발간
2006.11월	재무부, 지급결제시스템 T/F의 활동을 예정보다 18개월 단축하여 종료하고 TF에서 제시한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공정거래청 산하에 새로운 조직인 PIA(Payments Industry Association)를 설립하도록 허용 - 의장은 공정거래청이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회원
2007.2월	공정거래청, 지급결제시스템 T/F, 최종 보고서 발간
2007.3월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 설립 - 2006년말 폐지된 지급결제시스템 T/F를 승계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기구 형태로 설립
2007.8월	영국지급결제협회(APACS), 당일 청산·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s의 도입시기를 2007.11월말에서 2008.5월말로 연기 발표
2008.5월	지급결제위원회,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National Payments Plan) 수립
2008.5월	APACS, 당일 소액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s System 도입 - 서비스 대상: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
2009.3월	공정거래청, 지급결제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Review of the operations of the Payments Council) 발간
2009.12월	지급결제위원회, 2018년말까지 수표 청산시스템 폐지 계획 발표
2010.6월	지급결제위원회,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 경과보고서(progress reprot) 발간

<참고 2>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 개요

-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는 지급결제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07.3월에 설립된 민간 회원제기구(membership organization)
 - 재무부의 Cruickshank Report(2000년)에 의거하여 지급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던 공정거래청(OFT)은 지급결제산업의 투명성, 개방성, 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지급결제시스템 T/F를 구성(2004.3월)
 - 지속적인 지급결제산업의 혁신을 위해 주요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T/F를 대체하는 자발적 민간기구로 지급결제위원회를 설립
- 2010.9월 현재 영란은행, 주요 상업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등 25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
 - 지급결제위원회 이사회는 3년 임기인 15명의 이사와 투표권이 없는 의장으로 구성되며, 합의제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도 실시(11명 이상의 찬성시 가결)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 이사 구성

구분		인원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		4
업계이사 (Industry Directors)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비중이 5% 이상인 업체 대표	6
	1~5%인 업체대표	3
	1% 미만인 업체대표	3
계		15

□ 지급결제위원회의 설립목적은 ① 지급결제산업의 비전 제시 및 발전 선도, ② 지급결제제도의 개방성 및 투명성 보장, ③ 지급결제산업의 효율성, 유효성 및 무결성 보장

— 지급결제위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과 긴밀히 협조

* Bacs, CHAPS Clearing Company, Cheque and Credit Clearing Company, LINK ATM Scheme 등

— 또한 2008.5월에는 2018년까지 추진할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National Payment Plan)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제도·정책 개선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3개 워킹그룹*이 활동중

* WG on Single Euro Payments Area, WG on Payment Services Directive 및 WG on Cash Services

— 한편 발전전략에 대한 이용자와의 토론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소비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3개 그룹의 “이용자 포럼”(User Forum)을 구성하여 운영

□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위원회와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의 은행서비스담당 이사가 지급결제위원회 이사회의 옵저버로 참여

<참고 3>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리뷰 T/F 개요

□ 2010.6월 캐나다 재무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soundness) 및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독립 “지급결제시스템 리뷰 T/F(Task Force for the Payments System Review)”를 설립*

* 2010.3월 발표한 캐나다 정부의 “2010년 예산보고서(Budget 2010)”에서 T/F설립을 권고

— T/F는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1년말까지 재무부앞 제출할 예정

— 검토대상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네트워크, 청산·결제시스템 등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포괄

□ T/F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담당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정책목표 파악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및 기관 구조 모색 및 평가

—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평가보고

— 지급결제시스템 신규 참가의 장애요인 파악 및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 지급결제시스템 혁신현황에 대한 평가 및 신규 혁신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스 전망에 관한 보고

—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소비자 및 가맹점의 평가보고

□ T/F 위원은 7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재무부에서 사무국업무를 지원

□ T/F는 금융기관, 소비자, 가맹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참고 4>

호주의 지급결제포럼 개요

□ 2009.3월 호주지급결제협회(APCA) 이사회는 호주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급결제포럼”(Australian Payments Forum)을 설립

* 동 포럼은 지급결제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을 위한 업계 주도의 논의를 요청한 호주중앙은행(RBA)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8월 설립된 “카드결제 포럼”(Card Payments Forum)을 확대·개편한 것임

—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급결제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의 발굴 및 모니터링*

* 주로 네트워크 연계, 메시지 및 정보교환 표준, 시스템의 신뢰성(integrity)과 사기방지, 시스템 혁신, 지급결제산업내 협력을 위한 공공 정책과제 등을 검토

— 경쟁촉진 방안 관련 지급결제산업 내의 투명한 토론의 장 제공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논의

— 호주중앙은행 등 기타 외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과제의 논의 및 협력

□ 의장은 호주 멜버른대학 경영학과 교수인 Ian Harper가 맡고 있으며 APCA가 사무국 업무를 수행

□ 포럼 참가자는 금융기관, 국제카드네트워크 운영기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가맹점, 소비자단체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

* APCA, Abacus, EFTPOS 운영기관, 호주은행협회, 호주가맹점협회,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

— 호주중앙은행과 재무부 대표도 사안에 따라 옵저버로 참석 가능

□ 포럼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참고 5>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결 제 대 상	도입연도	결 제 방 식
어음교환	어음·수표 및 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 (인터넷지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 급여이체	1977 (2000)	장표 및 전자 방식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타행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전자방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방식
CMS공동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전자방식
지방은행공동망	예금 입·출금, 송금	1997	전자방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2001	전자방식
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지급결제	2002	전자방식
G2B 지급결제시스템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2	전자방식
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소액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12

<참고자료>

(영국)

- Bank of England, "Payment Systems Oversight Report 2008", Issue No. 5, April 2009
- Financial Inclusion Taskforce, "Report on direct debit energy payments", December 2008
- HM Treasury, "Statistical Release: Households without access to bank accounts 2008-2009", December 2010
- OFT(Office of Fair Trading), "Review of the Operations of the Payments Council", March 2009
- Payments Council, "Payments Council Cheque Replacement Programme 2010 - A Progress Report", December 2010
- Payments Council,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Billers: Payment Reference Information",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Payers",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Communique", Newsletter, Issue 1,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Progress Report: Delivering the National Payments Plan", No.02, June 2010
- Payments Council, "Review of the Contactless and Prepaid Card Markets: Summary of Findings and Actions", May 2010
- Payments Council, "The Way We Pay 2010", April 2010
- Payments Council, "Annual Review 2009: Driving Change in UK Payments", 2010
- Payments Council, "The Future for Cash in the UK", March 2010
- Payments Council, "The Future of Cheques in the UK", December 2009
- Payments Council, "Financial Inclusion Policy", October 2009
- Payments Council, "Review of the UK Domestic Cheque Guarantee Card Scheme", June 2009
- Payments Council, "Industry Best Practi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 Number Formats", June 2009
- Payments Council, "Progress Report: Delivering the National Payments Plan", No.01, March 2009
- Payments Council, "Annual Review 2008: Driving Change in UK Payments", 2009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Setting strategic Vision for UK Payments", May 2008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Consulting on Change in UK Payments", December 2007

UK Cards Association, "Fraud the Facts 2010", March 2010

(캐나다)

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Canada's digital economy", Submission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Task Force for the Payments System Review Consultation, September 2010

CPA, "Annual Review 2009", Spring 2010

CPA, "CPA Payment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CPA, "Payment Strategy FAQs", February 2010

CPA, "Draft Long-Term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09

CPA, "International Benchmarking Survey Results - Governance, Funding & Membership-", February 2009

CPA, "International Research & Benchmarking Survey Results - Core Systems -", February 2009

CPA, "Environmental Scan -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Standards-", February 2009

Task Force for the Payments System Review, "The Canadian Payments Landscape: Open For Discussion ", September 2010

(호주)

APCA, "Annual Review 2010", November 2010

APCA, "APCA launches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for Australian payments", media releases, 11 March 2010

APCA, "Annual Review 2009", March 2010

APCA, "Annual Review 2008", March 2009

APCA, "Low Value Payments: An Australian Roadmap", December 2008

APCA, "Low Value Payments: Challenges of Evolution, A Consultation Document", May 2008

APCA, "Payments Monitor", 각호

Australian Payments Forum, "Charter for the Australian Payments Forum",
March 2009

RBA,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10", October 2010

RBA, "Annual Report 2010", August 2010

RBA, "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Australia's Payments System", Media
Release 2010-14, 22 July 2010

RBA, "Low Value Network Migration Project Timetable and Scope Information
Paper", February 2010

금융결제국 발간자료 목록

■ 정기간행물 (연간)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 지급결제정보
- 지급결제제도연구회 연구발표 자료집
-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 조사연구 및 업무참고자료

- 1996.11 주요국(G-10)의 지급결제제도
- 1996.12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 1997.12 실시간총액결제(RTGS)시스템의 이해

- 1998. 2 지급결제제도
- 1998.10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
- 1998.12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민간결제기구와의 관계

- 1999.12 주요국 소액지급수단 이용현황 비교

- 2000. 5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감축전략
- 2000. 6 Payment Systems in Korea
- 2000.12 BIS 은행감독위원회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 2001. 1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대응방안
- 2001. 1 호주의 지급결제제도
- 2001.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이해

- 2002. 2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 규정집
- 2002.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 2002. 3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 2002. 5 지급결제제도관련 용어집
- 2002. 6 전자금융: 전망과 과제
- 2002. 9 미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정책
- 2002. 9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제도 현황
- 2002. 9 한국은행 예금 및 환업무 해설
- 2002.11 국내금융기관의 정보화투자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2002.12 지급결제분야에서 일본은행의 역할

- 2003. 7 국내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동향 및 시사점
- 2003. 9 국내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와 금융정책
- 2003.12 한국은행 대출업무 해설원고

- 2004. 2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 2004. 3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현황
- 2004.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관련 규정집
- 2004. 3 전자금융총람
- 2004. 6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4.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 2005. 3 주요국 총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절약방식 비교분석
- 2005. 4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제도
- 2005. 6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5. 6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보고서
- 2005. 9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 2005.10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 2005.11 Payment Systems in Korea
- 2005.11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 2005.12 「한국은행 예금·환업무 해설」
 2005.12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의 유형별 관리대책과 정책과제
2006. 5 지급결제제도의 미래와 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6. 6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2006. 7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2006. 8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2006. 8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2006. 8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6. 9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
 2006.10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2006.11 미국의 선불카드 규제현황 및 시사점
 2006.12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2007. 1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에 관한 법률
 2007. 6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7. 9 지급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2007. 9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8. 1 ECB의 카드결제시스템 감시기준
 2008. 2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8. 2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현황
 2008. 2 지급결제의 이해
 2008. 4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2008. 5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6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의미와 과제
 2008. 7 유가증권의 매매 및 결제 메커니즘
 2008. 7 영국 · 프랑스의 증권결제 메커니즘
 2008. 8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2008. 8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주요내용
 2008.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2008.12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2009. 1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 2009. 5 전자금융총람
- 2009. 6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정집
- 2009. 8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9. 9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 2009.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9년 개정판)

- 2010. 6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 2010. 8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 2010. 9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10. 9 장외파생상품 CCP에 대한「CCP 권고안」적용 지침
- 2010. 9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고려사항
- 2010.10 Repo 청산결제제도의 강화
- 2010.10 Payment Systems in Korea
- 2010.11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 2010.12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서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 2011. 1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